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안 번호	2653
----------	------

2025년 4월 22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일 : 2025년 3월 31일
다. 회부일 : 2025년 4월 2일
라. 상정일 :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2025년 4월 22일 상정·의결 (수정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가. 제안이유

-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의 관리 운용부서 정비를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기금의 관리·운용의 기금관리공무원 중 분임기금운용관을 ‘도시계획과장’에서 ‘도시공간전략과장’으로 변경함 (안 제7조)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도시계획과장’에서 ‘도시공간전략과장’으로 변경함(안 제9조)

다. 그 밖의 제목 및 문구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 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 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 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5. 2. 13. ~ 3. 5.) 결과: 의견 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가.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4.11월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른 공공시설 관련 기금 설치 및 운용 업무의 부서 이관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기금관리공무원(안 제7조제1항제2호)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안 제9조제2항)을 변경하고, 일부 조문에 대해 자구 수정(안 제3조, 제8조)을 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설치) (생략)	제3조(기금의 설치) (현행과 같음)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 -----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분임기금운용관 : 도시계획과장	2. ----- 도시공간전략과장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관리·운용 ----- ----- ----- ----- ----- -----

현행	개정안
둔다. 1. ~ 3. (생략) 4. 그 밖에 기금의 <u>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u>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도시공간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u>도시계획과장</u>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3. (생략) ③·④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4. ----- <u>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u> ----- -----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도시공간전략과장</u> ----- -----. 1. ~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부칙	
현행	개정안
< 신설 >	<u>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u>제2조(위원회 운영에 관한 적용례) 2024년 11월 13일 시행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제7조제1항과 제9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1월 13일 이후 운영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u>

나. 검토 내용

(1) 기금 관리·운용 공무원의 변경(안 제7조제1항제2호)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제1항제2호는 '24.11월 서울시 조직개편¹⁾에 따라 '공공시설 관련 기금 설치 및 운용 업무'가 기존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공간전략과로 이관된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시설등설치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기금관리공무원 중 분임기금운용관을 현행 도시계획과장에서 도시공간전략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 -----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분임기금운용관 : <u>도시계획과장</u>	2. ----- <u>도시공간전략과장</u>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²⁾에 따르면,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해 기금의

1)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전략과,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 계획, 2025.1.16.

□ 추진배경

- 조직개편('24.11.13.)에 따른 기금 설치·운용 부서 정비 필요
 - 공공기여 기금 운용 업무 이관 (도시계획과 → 도시공간전략과)

2)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023.7., p.342.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분임 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으며 시·도의 분임기금운용관은 담당 과장으로 할 수 있으므로, ‘공공시설 관련 기금 설치 및 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도시공간전략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함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의 변경(안 제9조제2항)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제2항은 서울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도시공간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계획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3. (생략) ③·④ (생략)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도시공간전략과장 ----- ----- ----- 1. ~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 회계관직의 지정(지방기금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2항)

-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해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음
-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별도관리 하여야 함

구분	시·도	시·군·구
기금총괄관리관	예산업무 담당실(국)장	예산업무 담당 실(과)장
기금운용관	기금별 담당 실(국)장	기금별 담당 실(과)장
분임기금운용관	기금별 담당 실(과)장	-
기금출납원	기금별 담당 실(과) 업무담당(또는 주무담당)	기금별 담당 실(과) 업무담당(또는 주무담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하, “지방기금법”)」 제13조³⁾에 따르면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고, 해당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제2항은 「지방기금법」 및 서울시 조직개편 사항⁴⁾을 반영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됨

(3) 자구수정(안 제3조, 안 제8조)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는 조항의 제목을 ‘설치’에서 ‘기금의 설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치하는 대상인 ‘기금’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표현하여 달리 해석이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⁵⁾가 있다고 하겠음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조직개편(24.7.1.字), 2024.7.15. (도시공간전략과-5588)

5)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열번째판-, 2021년 12.월, p.6

제1장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소개

제3절 알법의 기본 원칙

- 명확하고, 논리에 어긋나지 않으며, 나타내려는 뜻이 한눈에 들어오는 표현으로 정비한다.
 - 법령문은 용어와 표현 등이 명확해야 하며, 논리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법령문을 적용하는 국가기관이나 법령의 적용을 받는 국민이 법령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법령은 국민생활의 많은 부분을 규제하고 영향을 미치므로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조금이라도 달리 해석될 여지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는 해당 조항의 내용 중 ‘운용·관리’를 ‘관리·운용’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4호의 내용 중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를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이는 현행 조례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⁶⁾의 조제목에 맞춰 용어를 통일하여 조문의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다만, 현행 조례 제6조제3호⁷⁾의 내용 중 기금의 ‘운용·관리’를 ‘관리·운용’으로 병행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3조(설치) (생략)	제3조(기금의 설치) (현행과 같음)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u>운용·관리</u>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u>관리·운용</u>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기금의 <u>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u>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 <u>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u> ----- -----

가 없게 한다.

- 이해를 어렵게 하는 불분명한 수식관계, 복잡한 회계관계가 서술된 문장은 계산식과 도표를 활용하거나 각 호로 구분하는 등 시각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6)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 7)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3.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 수반되는 부대경비

(4)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적용례 (안 부칙 제2조)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는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사항에 대해 위원회 운영 적용 시점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5항제16호의 개정⁸⁾에 따라 ‘공공기여 관련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관련 업무가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공간전략과로 이관된 시점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 적용 시점을 2024년 11월 13일 이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는 것은 부서 간 업무분장 및 수행을 위한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함

부 칙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u>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u>제2조(위원회 운영에 관한 적용례) 2024년 11월 13일 시행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제7조제1항과 제9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1월 13일 이후 운영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u>

8)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1조(도시공간본부) [시행 2024. 11. 13.] [서울특별시규칙 제4671호, 2024. 11. 13., 일부개정]

⑤ 도시공간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6. 공공기여 관련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다. 종합 의견

- 이번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기금관리공무원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을 하고자 하는 것임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제1항제2호는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라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분임기금운용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기준에 따라 기금관리공무원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한다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됨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는 서울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운용·관리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보임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및 제8조는 자구 수정에 관한 부분으로,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하고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며 문장을 재정비하고자 한다는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보임. 다만, 조문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현행 조례 제6조제3호의 내용 중 ‘운용·관리’를 ‘관리·운용’으로 병행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는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사항에 대해 위원회 운영 적용 시점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구체적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여 부서 간 업무의 분장 및 수행을 위한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가. 수정이유

-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⁹⁾에 따르면 같은 의미나 대상에 대하여 서로 다른 표현을 쓰던 것은 하나의 용어로 통일해서 쓰도록 권고하고 있음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현행 조례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¹⁰⁾ 등 조제목에 맞춰 제6조제3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수정하여 조문에 대한 표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6조제3호 중 ‘운용·관리’를 ‘관리·운용’으로 수정함 (안 제6조제3호)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 열 번째판 -, p.87

다. 통일해서 쓸 용어

정비기준 : 같은 의미나 대상에 대하여 서로 다른 표현을 쓰던 것은 하나의 용어로 통일해서 쓴다.

10)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653
----------	------------

제안연월일 : 2025년 4월 22일
제안자 : 도시계획균형위원장

1. 수정이유

-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¹⁾에 따르면 같은 의미나 대상에 대하여 서로 다른 표현을 쓰던 것은 하나의 용어로 통일해서 쓰도록 권고하고 있음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현행 조례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²⁾ 등 조제목에 맞춰 제6조제3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수정하여 조문에 대한 표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6조제3호 중 ‘운용·관리’를 ‘관리·운용’으로 수정함 (안 제6조제3호)

3. 참고사항 : 생 략

1)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 열 번째판 -, p.87

마. 통일해서 쓸 용어

정비기준 : 같은 의미나 대상에 대하여 서로 다른 표현을 쓰던 것은 하나의 용어로 통일해서 쓴다.

2)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3호 중 “운용·관리”를 “관리·운용”으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3조(설치) (생략)	제3조(기금의 설치) (현행과 같음)	제3조(기금의 설치) (개정안과 같음)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 ----- -----.	제6조(기금의 용도) (개정안과 같음)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1. 2. (개정안과 같음)
3. 기금의 <u>운용·관리</u> 를 위해 수반되는 부대경비		3. ----- <u>관리·운용</u> ----- -----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① ----- ----- ----- -----. ----- ----- ----- ----- ----- ----- ----- ----- ----- ----- ----- ----- ----- ----- -----.	① (개정안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분임기금운용관 : <u>도시계획과장</u>	2. ----- <u>도시공간전략과장</u>	2. (개정안과 같음)
3. (생략)	3. (현행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u>운용·관리</u>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 시설등 설치기금운용심 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 3. (생략) 4. 그 밖에 기금의 <u>효율적 인 운용·관리</u>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 설치 및 기능) ----- <u>관리·운용</u>-----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u>관리·운 용에 관한 중요사항으 로써</u> ----- -----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 설치 및 기능) (개정안 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도시공간본 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계획과장으로 하 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3. (생략) ③·④ (생략)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도시공간전략과장</u>----- ----- -----. 1. ~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③·④ (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설치)”를 “(기금의 설치)”로 한다.

제6조제3호 중 “운용·관리”를 “관리·운용”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공간전략과장”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용·관리”를 “관리·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를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공간전략과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운영에 관한 적용례) 2024년 11월 13일 시행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제7조제1항과 제9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1월 13일 이후 운영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행	개정안
제3조(설치) (생략)	제3조(기금의 설치) (현행과 같음)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기금의 <u>운용 · 관리</u> 를 위해 수반되는 부대경비	3. ----- 관리 · 운용 ----- -----
제7조(기금의 관리 · 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 운용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 · 운용) ① -----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분임기금운용관 : <u>도시계획과장</u>	2. ----- 도시공간전략과장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u>운용 · 관리</u>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관리 · 운용에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4. 그 밖에 기금의 <u>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u>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도시공간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u>도시계획과장</u>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3. (생략) ③·④ (생략)	4. ----- <u>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u> ----- -----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도시공간전략과장</u> ----- ----- -----. 1. ~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